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제도 등 적용 제외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902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0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5호)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2호)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902호)	1
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30호)	3
3.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45호)	5
4.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42호)	7
5.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50호)	9
II. 주요 내용별 검토	10
1.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제도 등 적용 제외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부양가족연금액·반환일시금 및 연금보험료 추납제도	22
다. 검토의견	27
라. 관계 기관 의견	34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9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8. 28.
- (3) 회 부 일 : 2026. 8.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 (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2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3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9. 7.

(3) 회 부 일 : 2026. 9.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 변경 · 소멸 · 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3.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9. 8.
- (3) 회 부 일 : 2026. 9. 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다. 주요내용

- 1)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안 제126조 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4. 이달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달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9. 9.
- (3) 회 부 일 : 2026.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제6항 신설).

5.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9. 9.
- (3) 회 부 일 : 2026.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제도 등 적용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각 개정안은 현행법 제126조제1항¹⁾ 본문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 (주호영의원안)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전면 제한하려는 것임.

- (김미애의원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제한하되,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외국인 중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외국인인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단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만희의원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연금액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각각을 허용하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그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달희의원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제한하되,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나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현행법 제126조제4항²⁾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시금의 산정방법이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산정방법 및 반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김교홍의원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연금액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나 체류자격·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각각을 허용 하려는 것임.

2)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현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21 조 (수 급 권 변 경 등 에 관 한 신 고 등) ① ----- ----- ----- ----- ----- ----- ----- ----- ----- ----- ----- ----- ----- ----- ----- ----- . 이 <u>경우 외국 인인 수급 권자 및 수 급 자는 수 급 권 의 발 생 · 변 경 · 소 멸 · 정 지 및 기 여 액 의 산 정 · 지 급 등 에 관 련 된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매 년 공 단 에 신 고 하 여 야 한 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신 설>		같음) ③ 공단은 외 국 인 인 수 급 권 자 및 수급자 의 수급권 발생·변경 · 소멸·정 지 등에 관 한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를 요청받 은 관계 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 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생 략)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 음)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 음)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 액을 산정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제4항 단서에 따 라 외국인 가입자 등	제126조(외 국인에 대 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가입자 중 외국인 에게는 제 92조를 적
<신 설>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할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양가족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 정 액 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게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외국인 의 본국 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시금에서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에 상응하는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액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금 액 을 제외하고 지급하도 록 규정 하고 있 는 경우: 제77조제 2 항 에 도 불구하고 그 외국 인 가입 자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 금의 액 수는 본 인이 부 담한 기 여 금 에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이 자를 더 한 금액 으로 한 다. 2. 대한민 국 국민 이 지급 받은 일 시 금 을 반납하고 그에 상 응 하 는 기 간 을 가입기간 에 산입 할 수 있 는 규정	따른 규 정이 대 한 민 국 국 민 에 게 적용 될 것 2. 체류자 격, 가입 기간 및 보 험 료 납부 기 간 등 특 성을 고 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외 국인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② ~ ④ (생략) <신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 게는 제92 조를 적용 하지 아니 한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 게는 제92 조의 규정 을 적용하 지 아니한 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 민국 국민 이 연금보 험료를 최 초로 납부 한 이후 제 91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 니한 때에	③ ~ ⑤ (현행 제2 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⑥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제92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 니한다. 다 만, 외국인 의 본국 법 에 따라 대 한민국 국 민이 연금 보험료를 최초로 납 부한 이후 제9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기간에 대하여 연 금보험료의	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외국인 가입자등 에게는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⑥ 외국인 가입자등 에게는 제 92조의 규 정을 적용 하지 아니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경우에 는 그러하 지 아니하 다. 1. 외국인 의 본국 법이 대 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의 규정에	⑥ 외국인 인 수급권 자(유족연 금의 경우 에는 사망 한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 를 말한다, 이하 “외 국인 수급 권자”라 한다)에게 는 제50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 가족연금 액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 다 만, 다음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해당 기간 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의 추후 납 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 서 규정하 고 있는 경 우의 외국 인에 대하 여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추후 납부 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 서 규정하 고 있는 경 우의 외국 인에 대하 여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상응하는 연금보험 료의 추 후 납부 를 허용 하고 있 는 경우 2. 외국인 가입자등 이 연금 보험료를 납 부 한 기간(제9 2조에 따 른 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 부를 신 청한 기 간은 제 외한 다) 이 5년 이 상 인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외국인 에 대하여 는 그러하 지 아니하 다. 1.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가. 해당 외국인 의 본국 법에 따 라 이 법의 국 민 연금 에 상응 하는 급 여(제49 조제1호 부터 제 3호까지 의 급여 에 상응 하는 급 여를 말 한다)의 수급 권 을 취득 한 사람 에게 피 부양가 족(해당 수급 권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자에 의 하여 생 계를 유 지 하 고 있는 배 우 자 , 자녀 등 을 말한 다) 의 수를 기 초로 산 정된 일 정 금 액 을 급여 에 더하 여 지급 하 도 록 그 나라 법 에 서 규 정 하 고 있을 것 나. 가목의 본국 법 규 정 이 대 한 민 국 국민 인 수급 권자 및 피 부 양 가 족 에 게도 적 용될 것 2. 체류자 격 및 체 류 기 간 등 특성 을 고려 하여 대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신 설>		⑥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입 자등에게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1. 제92조제	⑦ 공단은 외국인 가입 자등의 국내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조 회하여 외국인 가입 자등의 자격 또는 수 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u>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라 수급자 자격을 취 득한 외국 인 가입자 등에 대하 여도 적용 한다.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부 를 신청하 는 경우부 터 적용한 다.		지급을 청 구하거나 반납금의 납부를 신 청하는 경 우부터 적 용한다. ② 제126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 보험 료의 추후 납부를 신 청하는 경 우부터 적 용한다.	정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 인 수급권 자에 대하 여는 제12 6조 제6항 의 개정규 정에도 불 구하고 종 전의 규정 에 따라 산정된 부 양가족 연 금액을 계 속 지급한 다. ② 제1항 에 따라 종전의 부 양가족 연 금액을 계 속 지급받 는 외국인 수급권자 중 제126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에 따르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 우, 이 법 시행 후 제52조 제1

현 행	주호영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김교홍의원안
					항 각 호 에 새롭게 해 당 하 는 자에 대하 여는 부양 가 족 연 금 액의 계산 에서 제외 한다.

나. 부양가족연금액·반환일시금 및 연금보험료 추납제도

- 노령·장애·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 중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장애연금의 수급권자나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망인(亡人)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자녀’ 또는 ‘63세(2026년 기준)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부모’에 대하여 지급됨.³⁾

3)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

- 참고로, 2026년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간 306,630원이 지급되고, 자녀 또는 부모의 경우 연간 204,360원(1인당)이 지급됨.

□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함께 ‘**반환일시금**’을 급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⁴⁾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① 사망하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또는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며,

그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⁵⁾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4)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음.⁶⁾

□ 다만, 현행법 제126조제4항에서는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①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외국인,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및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되,⁷⁾

6)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반환일시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포함 여부 등)이나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고려할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현행법 제92조⁸⁾에서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통하여 가입이력 상실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는 1999년 4월 시행되었는데, 당초에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10년 미만의 범위(최대 119개월)에서만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8)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외국인 가입자들의 추납 신청 건수는 총 1,517건으로 2021년(550건)에 비하여 약 176% 증가하였고, 이들이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총 109억원으로 2021년 (32억 9,400만원) 대비 약 231%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외국인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현황 >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한국계 중국인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기타
2021년	건수	550	334	76	48	43	20	35
	(비율)	(100)	(60.1)	(13.7)	(8.6)	(7.7)	(3.6)	(6.3)
	금액	3,294	1,851	631	239	294	76	204
	(비율)	(100)	(56.2)	(19.2)	(7.3)	(8.9)	(2.3)	(6.2)
2022년	건수	528	317	71	35	43	30	32
	(비율)	(100)	(60.0)	(13.4)	(6.6)	(8.1)	(5.7)	(6.1)
	금액	3,408	1,915	759	173	211	94	257
	(비율)	(100)	(56.2)	(22.3)	(5.1)	(6.2)	(2.8)	(7.5)
2023년	건수	530	376	36	41	33	16	28
	(비율)	(100)	(70.9)	(6.8)	(7.7)	(6.2)	(3.0)	(5.3)
	금액	3,040	2,314	200	159	171	71	125
	(비율)	(100)	(76.1)	(6.6)	(5.2)	(5.6)	(2.3)	(4.1)
2024년	건수	848	603	66	62	40	30	47
	(비율)	(100)	(71.1)	(7.8)	(7.3)	(4.7)	(3.5)	(5.5)
	금액	5,461	3,981	525	369	216	133	236
	(비율)	(100)	(72.9)	(9.6)	(6.8)	(4.0)	(2.4)	(4.3)
2025년	건수	1,517	1,158	109	103	60	38	49
	(비율)	(100)	(76.3)	(7.2)	(6.8)	(4.0)	(2.5)	(3.2)
	금액	10,900	8,346	886	625	516	178	348
	(비율)	(100)	(76.6)	(8.1)	(5.7)	(4.7)	(1.6)	(3.2)
2026년 상반기	건수	994	792	47	64	29	30	32
	(비율)	(100)	(79.7)	(4.7)	(6.4)	(2.9)	(3.0)	(3.2)
	금액	7,317	5,707	468	384	243	159	356
	(비율)	(100)	(78.0)	(6.4)	(5.2)	(3.3)	(2.2)	(4.9)

자료: 국민연금공단

다. 검토의견

- 최근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납 신청이 많아졌고, 특히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초단기인 외국인 가입자등이 이미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사후적으로 추납보험료를 일시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기 위한 가입기간 요건(10년)을 충족하게 되는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생애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 문제와 함께 가입이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외국인인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나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공단이 피부양가족의 생사(生死)나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 등 수급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급여의 사후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그 자격을 확인하는 관리·감독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 이에 각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나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급여의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이달회의원안은 반환일시금의 산정방법이나 그 반납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의 본국 법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그 세부적인 내용 등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등별로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제도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체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각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려는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상호주의나 그 밖에 제3의 예외 사유를 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상이하므로, 각론별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규율 대상) 각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관한 외국인 가입자등의 적용관계를 규율하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만회의원안·김교홍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반환일시금’에 관한 사항은 이달회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각 개정안이 최근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저해 논란을 비롯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적용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경과와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나 급여 지급의 사후 관리·감독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이나 외국인인 수급권자·수급자 등에 대한 적용 관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합리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제도의 범위를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만희의원안·김교홍의원안**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126조제3항에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4조 본문에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⁹⁾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이만희의원안 제126조제2항·김교홍의원안 제126조제6항**’ 또는 ‘**현행법 제126조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게 되므로,

외국인 가입자등의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적용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조항 간에 체계 정합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9)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둘째: 상호주의 등 예외 허용 여부) 주호영의원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인 반면, 나머지 4건의 개정안은 상호주의나 그 밖의 제3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¹⁰⁾

그런데, 모든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제한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가입이력 보충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나 체류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이달회의원안·김교홍의원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며 경제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온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 등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나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10) (김미애의원안) 상호주의가 적용되면서 연금보험료 정상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이만희의원안) 상호주의가 적용될 것
(이달회의원안)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나 연금보험료 정상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김교홍의원안)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나 체류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이 있을 것

상호주의 외에 제3의 예외 사유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산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이달회의원안 제126조제6항제2호는 연금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제3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추납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한 후 추납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여야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므로,¹¹⁾

이달회의원안 제126조제6항제2호 중 “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제92조에 따라 납부한 추납보험료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연금보험료 추납 기간) 김미애의원안 제126조제6항 후단은 상호주의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12개월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보험료를 예외적으로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외국인 가입자들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가입이력 상실분 보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본질과 내국인-외국인 간의 형평

11)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이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김미애의원안 제126조제6항제1호(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 및 제2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른 기간이 모두 10년을 초과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92조제1항¹²⁾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김미애의원안 제126조제6항제2호 후단에서 “외국인 가입자등이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짧은 기간(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시행일) 각 개정안은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서로 다르게 규정¹³⁾하고 있음.

따라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저해 논란을 비롯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적용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최근 급속히 확산한 측면과 함께,

12)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13) (공포일) 김교흥의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주호영의원안·이달희의원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김미애의원안·이만희의원안

각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외국인 가입자등이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소지와 법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적용례 및 경과조치) 주호영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 가입자등이 되었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김미애의원안·이달희의원안을 참고하여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김교홍의원안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는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라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수급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등 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일률 금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한 국가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고(상호주의 적용),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납세 등 기여한 외국인까지도 일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